

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기준등으로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시민회관 사용허가시 제한규정인 “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”와 “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” 등 자의적 판단규정을 구체화함. (안 제5조)
- 나. 시민회관 사용료 감면규정 중 일부감면규정을 전면감면으로 통일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행사도 사용료 전부감면대상으로 추가. (안 제9조)
- 다.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·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. (안 제13조)
- 라.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는 요건 중 “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경우”와 “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” 등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 (안 제16조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으며, 시민회관 사용제한의 경우 “미풍양속 저해요인”과 “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” 등 자의적 판단규정을 구체화함은 물론, 입장의 제한에 있어서도 추상적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지 방 자 치 법

제 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